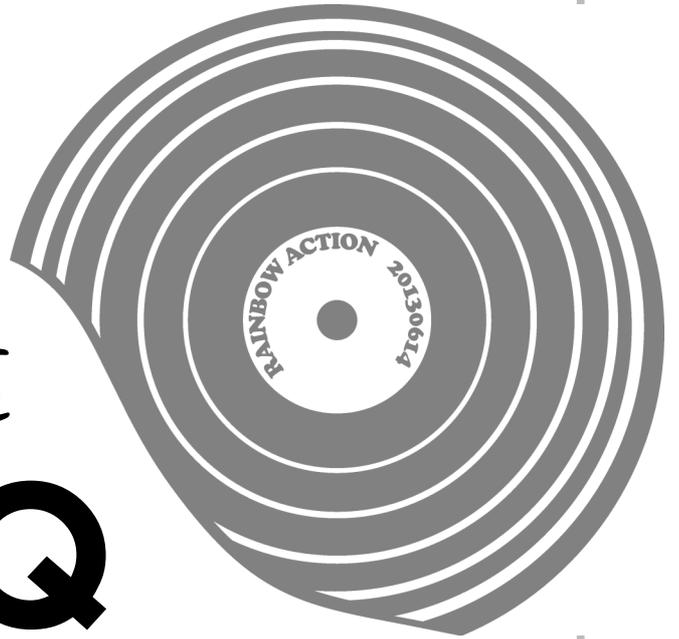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 토론회

성소수자가 알아야 할

막강 FAQ



일시_ 2013년 6월 14일 금요일 늦은 7시 30분

장소_ 〈인권중심 사람〉 다목적홀 한터

순서_ [발제] 조혜인 "차별금지법의 이해"

[발제] 곽이경 "성소수자 혐오에 맞서 무엇을 할 것인가?"

질문과 대답 함께 만들기

사회 나영_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주최_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http://lgbtact.org>

차별금지법의 이해

조혜인_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1. 포괄적(일반적) 차별금지법의 의의

○ 현재 한국에는 차별시정을 위한 개별적인 차별금지법들이 존재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에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 국내 개별적 차별금지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87년 제정)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1999년 제정, 2005년 폐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6년 제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07년 제정)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2008년 개정)

○ 그러나 개별적인 차별금지법들만으로는 개별법 이외의 영역에서 발생하거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차별사유들과 하나의 특정 사유에 국한되지 않고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차별의 양상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역시 그 본질이 실체법이 아닌 조직법에 해당하고 구제수단에 강제력이 없어 피해자 구제에 미흡하다는 점 등에서 일반적 차별금지법을 대신하기에는 명백한 한계를 지닌다.

○ 이에 따라 헌법상 평등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실체법으로서, 차별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을 제공하며 개별 차별관련법제 및 정책의 상위법이자 준거법으로 기능할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요구되어 왔다.

○ 국제사회의 권고 : 한국 정부는 2007년 이후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¹⁾, 여성차별철폐위원회²⁾, 아동권리위원회³⁾, 인종차별철폐위원회⁴⁾ 등에서 (성적지향을 비롯하여 모든 차별사유를 명시한 형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계속하여 권고 받아오고 있다. 2012. 10. 25. 유엔 인권이사회에 대한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 심의에서도 10개 국가의 대표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권고를 제시하였고 그 중 2개 국가는 차별금지법안에 성적 지향을 반드시 명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2. 해외 입법례

○ 대표적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캐나다 인권법(1977), 뉴질랜드 인권법(1993), 아일랜드 평등법(2004), 독일 일반적 평등대우법(2006), 프랑스 차별금지법(2008), 영국 평등법(2010) 등을 들 수 있다.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대한 입법례⁵⁾

국가	법률명	차별금지사유
네덜란드	평등대우기본법(1994)	성별(sex), 성적지향
스웨덴	차별금지법(2009)	성별, 성정체성(transgender identity or expression), 성적지향
독일	일반적 평등대우법(2006)	성정체성 성별
영국	평등법(2010)	성별, 성전환, 성적지향
캐나다	인권법(1977)	성별, 성적지향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1966)	성적지향, 젠더, 성별
뉴질랜드	인권법(1993)	성별, 성적지향
아일랜드	고용평등법(1998) 평등지위법(2000)	성적지향, 성
뉴욕시	인권법(2002)	성별, 성적지향
호주	북부준주차별금지법(1992)	성, 섹슈얼리티
	NSW 차별금지법	성, 성적지향, 트랜스젠더

1) 유엔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위원회, 한국 정부의 제3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 권고문 (E/C.12/KOR/CO/3), 2009. 12. 17.

2)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정부의 제7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 권고문(CEDAW/C/KOR/CO/7), 2011. 7. 29.

3)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 정부의 제3차, 제4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 권고문(CRC/C/KOR/CO/3-4), 2011. 10. 6.

4)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정부의 15차, 16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 권고문(CERD/C/KOR/15-16), 2012. 9. 5.

5) 이숙진(2010), “젠더 관련 차별금지 입법 연구”, 국회입법조사처, 27~28쪽 [표10] 인용 및 재구성

3. 기존 입법 추진 경과

○ 17대 국회

-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
- 2006. 7. 25. 국가인권위원회, 국무총리에 「차별금지법안」을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의 19개 차별금지사유에 '고용형태'를 추가하고, 권리구제규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명령제도, 시정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도입함
- 2007. 10. 2. 법무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
: 입법예고안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법안의 차별금지사유 중 '고용형태'를 삭제하고, 권리구제규정 중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 명령권 및 이행강제금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제외하였음
- 2007. 12. 12. 법무부, 7개의 차별금지사유가 추가삭제된 형태의 차별금지법 발의
: 삭제된 차별금지사유는 재계 및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이 거셌던 '병력,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 처분의 전력, 성적 지향, 학력'
: 정부는 2 이상의 국내법에서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및 자유권규약에 규정된 사유를 기준으로 차별금지사유를 선정하였다고 밝힘
- 2007. 12. 시민사회·인권단체,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반차별 공동행동' 결성(이하 반차별 공동행동)
- 2008. 1. 28. 노회찬 의원 등 차별금지법 발의
: 반차별 공동행동에서 마련한 법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의 19개 사유에 '성별정체성, 언어, 고용형태'를 추가한 형태로 차별금지사유를 규정하고, 권리구제수단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권 및 이행강제금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제도 등을 명시
- 2008. 5. 17대 국회 임기만으로 양 법안 모두 자동 폐기

○ 18대 국회

- 2010. 2~12.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과분과위원회 운영
- 2010. 12. 시민사회·인권단체, 반차별 공동행동의 제안으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결성
- 2011. 9. 15. 박은수 의원(민주통합당) 등 11인 차별금지기본법 발의
- 2011. 12. 2. 권영길 의원(통합진보당) 등 10인 차별금지법 발의
: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마련한 법안
- 2012. 5. 18대 국회 임기만으로 양 법안 모두 자동 폐기

○ 19대 국회

- 2012. 11. 6. 김재연 의원(통합진보당) 등 10인 차별금지법 발의
: 2011. 권영길 의원안과 동일한 법안
- 2013. 1. 23. 법무부, 제2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권고 수용 등에 관한 정부 입장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수용
: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연구·검토 과정에서 성적 지향 포함 여부를 검토할 예정
- 2013. 2. 12. 김한길 의원(민주통합당) 등 51인 차별금지법 발의
- 2013. 2. 20. 최원식 의원(민주통합당) 등 12인 차별금지법 발의
- 2013. 4. 5. 법무부, 2013년도 대통령 업무보고
: 크게 7가지 주요업무 계획, 4번째 '사회통합적 인권 보호체계 구축'에서
(1) 효율적 인권정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국가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추진
(2)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사회통합을 위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기본법제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 2013. 4. 24. 일부 보수개신교계를 중심으로 한 반대에 부딪혀 김한길의원 대표발의안, 최원식의원 대표발의안 각각 철회

4. 법안에 대한 몇 가지 반대주장의 논박

1) “차별금지법을 위반하면 강력한 형사처벌(징역 2년, 벌금 3000만원 등)을 받는다”

○ 그간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안에는 징역형이건 벌금형이건, 차별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차별금지법안은 철저하게 비사법적(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민사적인 구제절차만을 규정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안의 구제절차 개관》

-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절차
 - 인권위에 차별 진정 → 인권위법에 따른 조사 및 구제
 - (일부법안)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요청, 소송지원제도
 - (일부법안) 시정명령권(이행강제금)제도 →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과 소제기
- 사법(司法)적인 권리구제절차
 - 법원의 임시조치
 - 법원의 적극적 판결 및 손해배상
 - (일부법안) 악의적 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 법안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형사처벌 조항은 차별행위가 아니라 구제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용자 등이 가하는 보복성 조치를 처벌하는 조항이다.⁶⁾ 즉,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증언, 자료 등을 제출하거나 답변을 하였다든 이유로 사용자 등이 해고, 전보, 징계, 퇴학 등 불이익한 조치를 가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서 차별행위에 대한 규제와는 명백히 구별되는 조항이다.

○ 김한길 의원안에 있었던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은 벌금이 아니라 행정상의 과태료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를 했는데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권위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하고 위 명령의 실효성을 위해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라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러한 시정명령에는 불복할 수 있으며 소를 제기하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된다.

2) “차별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차별금지법안은 상식적인 수준의 의견표명이나 설교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아니며 이에 대한 규제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

○ 표현과 관련하여, 그간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은 차별을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만을 차별로서 다루어왔다.⁷⁾ 다만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혐오발언 등으로 타인의 존엄성을 해치는 정도가 된다면 차별의 한 유형인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⁸⁾

○ 혐오나 편견을 부추기는 발언은 단순한 위협이나 괴롭힘을 넘어 물리적 폭력이나 대규모 집단적 인권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특정한 대상을 겨냥하여 이들의 삶의 가치를 부정하면서 차별과 배제를 확산시키며, 이들 개인과 집단에 대한 심리적 폭력과 사회적 배제와 낙인을 파생시키며 혐오범죄에 이르기까지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⁹⁾ 따라서 이에 대한 일정한 규제는 필요하다. 다만 기존의 차별금지법안들은 이러한 발언을 광고행위에 한정하여 매우 좁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규율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소수자 혐오발언의 규제방법에 대해서는 차별금지법에 더욱 명확한 규정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과 별도의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다.

《소수자 혐오발언과 표현의 자유》

소수자의 기본권(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혐오발언이라면 그것은 이미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자유로운 의사와 표현이 민주사회의 기본적 조건

6) 김재연 의원안 제42조(불이익 조치의 금지) ① 사용자 및 임용권자, 교육기관의 장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또는 그 관계자가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증언, 자료 등의 제출을 하거나 답변을 하였다든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퇴학,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7)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광고행위 조항의 입법취지에 대해, 차별금지의 실효성을 위하여 차별금지영역에 미디어 영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나 표현의 자유와 의 충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미디어 영역 중 ‘광고’에 한하여 차별금지법을 적용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박찬운,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와 「차별금지법안」의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차별금지법안」 공청회 자료집(2006), 40쪽 참조). 해외의 경우 캐나다 인권법은 차별적인 표시, 기호, 상징, 문장 기타 묘사를 출판하거나 공중을 상대로 게시하거나 또는 출판·게시하도록 유발하는 행위를(동법 제12조), 뉴질랜드 인권법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려는 의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는 광고, 표시를 출판하거나 게시하거나 또는 출판·게시하도록 유발·허용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명시하여 금지하고 있다(동법 제67조 제1항).

8) “괴롭힘”이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존엄성을 해치거나, 수치심·모욕감·두려움을 야기하거나 적대적·위협적·모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김재연 의원안 제2조 제2호)

9)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2012),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제안」, 451쪽

이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는 것인데, 사회적 소수자를 위협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이 오히려 소수자를 사회에서 배제하게 된다면 이러한 표현은 사회적 폭력으로 작용하는 등 표현의 자유 보장 취지에 반하게 된다.¹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칙에 따라 혐오표현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일정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인권과 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타당한 접근이며 국제인권사회에서 확립되어온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국제인권규약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0조 제2항은 “차별, 적의, 폭력을 선동하는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증오의 고치는 법률로써 금지된다”라고 하여 증오의 고치는 공공정책에 반하고 이에 대한 위반을 제재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으며,¹¹⁾ 「표현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캄덴원칙」에서도 차별과 적대감, 폭력 등을 선동하는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원칙 12).¹²⁾ 이미 서구를 중심으로 혐오발언에 대한 규제가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나라들이 많고, 유럽인권재판소 역시 이러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¹³⁾

3) “헌법상 평등권이 보장되고 있는데 왜 또 다른 법률이 필요한가. 소수자에게 특혜를 주는 법이다”

○ 헌법은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상의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률을 만들고 정책을 수립하는 일은 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4) “법안에 열거된 차별금지사유가 너무 많다.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을 명시하지 않고 기타 사유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된다”

○ 2007년 당시 정부는 7개 차별금지사유를 삭제하면서 법안에 명시된 차별금지사유 선정 기준에 관하여, 2 이상의 국내법에서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및 자유권규약에 규정된 사유를 기준으로 대표적 차별금지사유를 선정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¹⁴⁾ 또한 인권단체들의 질의에 차별금지법안의 차별금지사유는 예시적인 것이므로 차별금지법안에 차별금지사유로 규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차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바 있다.¹⁵⁾

○ 현재 ‘성적 지향’은 이미 2 이상의 국내법¹⁶⁾에서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유이며(‘성별정체성’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실무상 성적 지향에 준하여 보고 있음), 유엔 인권조약기구들 역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인권조약상 차별로부터 보호되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 무엇보다 차별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차별 구제를 도모하겠다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하여서는 차별금지사유를 법률 해석의 2차적인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도록 구체적으로 모두 명문화하여 누구든지 차별금지사유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출신민족, 정치적 견해, 전과 등과 같이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존재하는 사유일수록 가치관에 따라 차별금지사유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항목일 가능성이 크므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조항에 명시하여 차별이 금지되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주어야 한다.

○ 차별금지법은 개별적 차별구제를 넘어 국가기관 등의 차별시정 의무 및 차별예방을 위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즉 정부는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정책 및 교육 전반적인 차원에서 세부적인 차별시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예방적 차별시정계획수립 및 차별 교육이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차별시정계획 수립 때 명문화 되지 않은 차별금지사유는 필연적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현실에서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차별사유들은 구체화해야 한다.

○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법이 19개의 차별금지사유를 예시적 형태로 열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적’ 차별사유를 선정하여 특정 항목만 명문화해야 할 합리적 이유도 기준도 없다. 차별금지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사유를 기초로 차별사유를 규정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10) 위의 책, 438쪽 참조

11) 위의 책, 439쪽 참조

12) Camden Principle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Equality, Principle 12

13) Vejdeland and Others v. Sweden, Application no.1813/07

14) 법제사법위원회(2008), ‘차별금지법안(정부) 검토보고서’, 6쪽 참조

15) 법무부가 2007. 11. 14. KSCRC와 민주노동당 등에 보낸 민원에 대한 회신.

16)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조

누가 혐오를 조장하는가. 성소수자 혐오에 맞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곽이경_ 동성애자인권연대

“차별금지법안 발의 이후 기독교 일부 교단을 중심으로 법 제정 반대 운동이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의원들을 상대로 낙선 서명운동 등을 내세운 압박도 계속되고 있다. 주체사상 찬양법’, ‘동성애 합법화법’이라는 비방과 ‘중복·게이 의원’이라는 식의 낙인찍기까지 횡행하고 있다.”

2013년 4월 19일 김한길/최원식 의원 작성
차별금지법안 발의에 동참해주신 의원님들께 올리는 글 중

지난 4월 19일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입법 철회했다. 알다시피 우파 기독교 중심 차별금지법 반대 세력의 압력 때문에 의원들이 법안을 자진 철회한 사태로 차별금지법 반대자들이 차별금지법안 철회를 위해 선전한 핵심에는 ‘중복’과 ‘동성애’가 있다. 혐오 세력은 보통 보수 기독교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들이 선전하는 동성애 반대 논리는 꼭 종교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들은 누구이고 어떤 주장을 펼치는가? 이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어떤 방식으로 조장하려고 하는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혐오 세력은 성소수자를 어떻게 공격해 왔나?

차별금지법 이전에도 동성애를 혐오하는 세력과 성소수자 운동이 부딪친 적은 많다. 그 역사는 적어도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 2003년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가 규정하는 동성애자 차별조항 삭제를 위한 투쟁과정에서 한기총이 국가인권위의 동성애 차별조항 삭제권고에 대해 비난하면서 시작되었다. 기독교가 늘 주장하듯이, ‘동성애는 소동과 고모라처럼 유황불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동성애가 신의 창조질서를 파괴하고, 가족을 붕괴시키며, 에이즈 확산의 주범’이라는 것이었다. 이 때 동인연 회원이었던 청소년 동성애자 육우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를 통해 성소수자 단체는 한기총과 정면 대립하게 되었다.

2. 차별금지법 제정이 화두가 된 2007년 우리는 한기총 외에 새로운 기독교 단체들을 접하게 되었다. 국가초찬기도회, 의회선교연합 등 기독교 정치인 중심의 여러 우파 기독교 단체들이 모여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벌였다. 이때 “북한인권 외면하고 동성애라니” “머느리가 남자라니” 등의 구호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3. 2010년 김수현 작가의 <인생은 아름다워> 드라마에서 동성 커플과 가족 간의 갈등 등이 진지하게 그려지면서 우파 기독교의 공격이 또 시작되었다. 당시 동성애허용법안반대국민연합으로 뭉친 이들은 사뭇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동원하여 동성애 반대에 나섰다. 때문에 동성애 반대 논리에 대한 진보진영의 논박도 이어졌다. 동성애 반대 근거로 가족 및 사회 붕괴, 에이즈 확산, 동성애 전염 및 학습, 동성애자의 우울하고 불건강한 삶에 대한 다양한 근거들이 신문광고 및 기사들로 도배되었다. 법무부가 다시금 차별금지법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벌어진 일로 이들은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배포하는 등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 조직적 행동에 나섰다. 이 시기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바성연)이 만들어졌고 성소수자 운동도 맞대응 광고를 내고 기자회견과 캠페인 등을 통해 우파들과 맞서면서 혐오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다.

4. 2010년 10월 국가인권위가 균형법 92조 계간 조항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발표한 이후 대한민국업체전우회, 라이트코리아, 6.25남침피해유족회, 외국인범죄척결국민연대 등 국가주의적 보수단체들이 혐오 세력으로 새로이 등장했다. 이들은 동성애가 군기강을 흐린다면 국가인권위 해체를 주장하거나, 국가안보 논리를 적극적으로 내세웠다.

5. 2011년 겨울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당시에는 참고육어머니전국연합 같은 우파 학부모단체들이 앞장서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반대했다. 이들은 부모의 이름으로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반대하고 임신출산과 성적지향을 공격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동성애자가 되고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막겠다는 주장을 폈다. 청소년 보호 논리와 성소수자 혐오가 결합되었다.

6. 혐오세력은 2010년 이후 영화 친구사이, 레이디가가 내한공연, XY그녀, 빌리티스의 딸들, 코미디 빅리그 등 미디어나 매체가 동성애 및 트랜스젠더를 다루는 것에 격하게 반대해왔다. 최근에는 MBC에서 동성결혼과 관련하여 우호적 보도를 했다는 것을 공격하고 있다. 이들은 청소년들이 매체를 통해 동성애를 학습하고 전염된다는 논리를 펴고, 동성애를 언론이 공공연하게 선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동성애를 다루는 거의 모든 매체를 공격하고 있다.

7. 지자체에도 우파 기독교 세력이 압력을 넣고 있다는 사실이 마포 현수막 사건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성소수자가 드러나는 모든 곳에서 전방위적으로 공격이 이뤄진다.

그럼 이들은 어떤 논리로 동성애를 반대하는가?

“며느리가 남자라니?” 가족가치를 지키기 위해 혐오를 활용

혐오세력은 동성애자는 자녀를 낳을 수도 없고, 제대로 양육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프랑스에서 팩스(시민연대계약) 입법 당시에 반대자들이 내건 구호인 “내 조카를 아동성애자에게 맡길 수 없다”는 말은 성소수자들을 보는 사회적 시선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하지만 동성애자 커플의 자녀들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이성애자 부부 자녀들보다 동성애자 부부의 자녀들이 더 불행하다는 근거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오히려 동성 커플의 자녀들이 학교나 사회에서 맞닥뜨리는 높은 혐오와 편견의 벽 때문에 더 힘들어한다는 사실은 사회적인 편견과 혐오가 진정한 문제임을 알 수 있게 한다. 한편, 동성결혼을 인정하면 출산율이 떨어지고, 산업인력이 감소하여 결국 사회가 망할 것이라고도 한다. 그렇다면 동성결혼을 세계최초로 인정한 네덜란드의 출산율이 한국보다 더 높은 이유를 무엇으로 설명해야 할까?

동성결혼은 이미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법적으로 보장하는 권리이다.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최근 프랑스와 포르투갈에 이르기까지 14개국 동성결혼을 보장하며, 프랑스 등 22개국 동성간 파트너십을 인정하는 시민결합을 보장한다. 일부 주에서 동성결혼을 보장하거나, 동성간 사실혼 관계 등을 인정하는 국가까지 더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난다. 그런데도 동성결혼을 허용하면 금방이라도 동성애자가 넘쳐날 것이라고 호들갑을 떠는 것이다. 언론에 동성결혼 반대글을 기고한 우남식 목사는 “동성결혼의 합법화는 성경체성의 혼란을 가져오고 가정의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생명 잉태는 소수자 인권 보호 이전의 문제이며 건강한 성윤리에 기초해 성경체성을 확립하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고 주장했다.

가족제도는 이성애 가족만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는 가치 위에 폐쇄적인 결혼 구조로 만들어졌다. 사람들은 ‘가족’안에서만 아이를 출산하고 자비를 들여 양육하여 노동력을 재생산해내는 것이 ‘올바르고 전통적인 가치’라고 믿어왔다. 동시에 가족제도에 완전히 고착되어 있는 고정된 남녀 성역할, 순결주의, 각종 성차별적인 관념들을 당연하다고 여겨왔다. 동성결혼은 이러한 관념에 일정 부분 도전하기 때문에, 저들은 기를 쓰고 반대한다. 성소수자들에게 가해지는 ‘비정상’ 낙인은 ‘이성애 정상가족’을 더욱 견고히 유지하고 사회적 차별을 정당화하는데도 활용된다. 그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가족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될까봐 두려워한다.

동성애는 민족의 명운이 걸린 일?

“사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동성애 청정국이었습니다.”

-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 2012년 5월 2일자 출연 녹화본, 윤정훈 목사

지난 해 방송된 케이블 채널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에서는 ‘레이디 가가 콘서트, 청소년 유해판정 적절했나’라는 주제로 윤정훈 목사와 진중권 교수 간의 토론이 펼쳐졌다. 이와 같이 동성애가 한국 민족의 전통에 맞지 않으며, 사회가 개방되기 전까지 우리 민족은 반동성애적 가치를 지켰다는 발언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사회에서도 부정하는 동성애를 허락한다면 학교가 무슨 실험집단입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려고 이런 폐국적, 망국적 발상을 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략) 동방의 빛, 동방의 순수한 우리 백의민족을 에이즈로써 파탄국가를 만들어 불치의 병인 에이즈의 온상이 되어 학생들은 두려움과 공포의 장인 학교를 다니게 될 것입니다. 백의 민족,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어집니다. 조국애의 사랑으로 판단해주십시오. 이것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입니다. 자원 없고 힘없는 땅덩어리 작은 이 나라의 백성들이 미래를 보장받는 위대한 선각자로 키우는 것을 우리가 원치 않습니까?”

- 김덕영 시의원

“당장 내게 손해가 없다고 해서 방관만 하다가 한국에서 동성애법이 통과가 된다면, 교회만이 아닌 국가적인 재난이 될 것이다. 동성애 합법화로 몰아가는 세력들에 대하여 우리가 용감하게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우리의 행동하는 기도는 음란과 동성애를 무너뜨리는 성결의 빛이 되어 동성애 입법을 막고 우리 조국을 거룩한 나라로 세울 것이다!”

- 에스더기도운동본부

민족 이익에 반하는 가치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선출된 대표들로부터 나온다면, ‘민족’이라는 개념으로 묶여있다고 여겨온 사람들에게는 모종의 위협이 될 수 있다. 성소수자 인권을 옹호하는 인터넷 기사라도 게재되면 “이렇게 하나씩 다 인정하다보면 이 나라가 온통 비정상이 될 것”이라고 경계 태세를 보이는 경우도 비슷한 예다.

이런 민족주의는 몇몇 국가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서구에 대한 저항과 동성애 반대를 같은 맥락에 놓는 것인데, 러시아나 아프리카는 동성애를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망가뜨리는 서구의 적이라고 규정하고 낙태나 성적 자유 같은 것도 사회를 분열시키거나 붕괴시킬 만한 것으로 몰아붙인다. 우간다 무세베니 대통령(박근혜가 취임 후 처음으로 초청한 외국 정상이다)은 삼십년이 넘도록 독재를 하면서 망가진 경제 때문에 불만에 가득 찬 대중의 분노를 동성애자들에게 돌렸다. 러시아 정교회는 서구에 물들지 않고 러시아 정체성을 지킨다는 이유로 동성애를 반대하고 최근 러시아 혐오범죄 및 반동성애 법안 통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동성애혐오를 이용하여 약해진 정치력을 지탱하기 위해 동성애는 서구를 따르는 행위라는 해괴한 공식을 만든 것이다.

차별금지법 반대집회에는 어김없이 태극기와 ‘대한민국 만세삼창’ 구호 등이 등장한다. 백의민족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을 국가

를 파탄낼 동성애와 에이즈 오염 논리와 명확하게 대립시킨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민족의 이익을 수호할 수 있는 길이며, 그것은 곧 가족가치를 강화하는 것과 연결되고 더 나아가 동성애를 반국가적인 것으로 만들고 이것을 반공이데올로기와 연결시키게 되는 길이 된다.

“중복게이”? 친북 = 빨갱이 = 동성애옹호, 국가안보=반동성애

지금 한국은 중복 낙인을 이용한 진보진영 탄압이 무서울 지경이다. 중복을 동성애와 결합시키는데에는 이런 논리가 사용된다.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진보진영은 빨갱이인데, 빨갱이 대표로는 주로 전교조와 통합진보당 등 진보정당 정치인들을 꼽아 공격한다. 주로 이 둘은 ‘친북’을 교육하고 대국민 선전을 한다는 이유로 공격받는다. ‘친북적인 빨갱이’들은 동성애를 지지하므로 군기강을 무너뜨려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국가와 사회의 도덕성과 윤리관을 무너뜨리고 국민 통합을 방해하는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면에서 반사회 세력이라고 공격받는다. 결국 빨갱이들의 목표는 사회 붕괴인데, 동성애도 ‘건강한 사회’를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보니 매우 잘 들어맞는 것 아닌가. 반공이데올로기는 객관적 상황 변화에 따라 때로 약화되기도 하지만, 요즘 같은 박근혜 정부에서 진보진영을 탄압하고 사회분위기를 냉각하기 위해 ‘중복’을 의도적으로 강조할 때에는 더욱 강화된다.

군형법 92조를 둘러싼 일련의 상황들은 위의 주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2010년 10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군대 내 동성애 처벌을 규정한 군형법 제92조에 대하여 위헌 의견을 국방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바로 이틀 뒤인 10월 29일에는 조선일보 하단광고가 다시 실렸다. 아래가 광고의 주요 내용이다.

“나라 지키러 군대 간 내 아들, 동성애자 되고 에이즈 걸려 돌아오나, 군대 내 동성애 허용하면, 내 아들 군대 절대 안보낸다!! - 3대 세습 독재 속에 굶어죽는 북한동포인권 외면하고, 동성애 확산시키는 독버섯 같은 국가인권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광고가 게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난입하였다는 기사가 났다. 어버이연합은 아시다시피 희망버스도 반대하고 이주민 권리도 반대하는 우파 집단이다. 국내에서 유일한 동성애 관련 조항이며, 유일한 처벌 조항이라는 사실 때문에 군형법 92조의 동성애자 차별조항 삭제 문제는 수년 간 동성애자 운동의 주요 과제 중 하나였다. 고등군사법원이 군형법의 취지가 “군사의 기강 문란 및 전투력 약화, 개인의 성도덕 관념과 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는 것은 군형법의 존재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데올로기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주입한 것이기 보다는 사람들에게 이미 뿌리 깊게 내재된 편견과 고정관념들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 이성애를 정상적인 성으로 규정하고 동성애를 비정상이라는 틀 안에 놓아둠으로 인해 도덕적 보수주의를 쉽게 조작하고 정상 가족을 또한 강화할 수 있었다는 것은 앞서도 재차 언급한 것이다.

<참고> 파시즘, 메카시즘 - 성소수자들에게 더욱 끔찍한 역사

1. 파시즘

과감하게 ‘빨갱이’와 동성애자들을 연결시키는 사례는 빈번히 찾아낼 수 있다.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는 보다 야만적인 성소수자 탄압이 있어왔는데, 파시즘과 메카시즘의 역사는 민족주의와 반공이데올로기 그리고 가족가치가 어떻게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아 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들이다.

나치 정권의 핵심 인물이었던 괴벨스는 “여성에게 적합한 장소는 가족이며, 가장 중요한 의무는 국가와 민족에게 아이를 선물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참된 민족 국가는 ‘자연스러운’ 남녀의 영역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구분하고 정치와 국방과 같이 남자의 영역에 속하는 것은 남성들에게 일임할 것을 지적하였다. 히틀러는 “남성들의 세계가 국가이고 그들의 임무가 사회를 지키는 일이라면 여성들의 세계는 그녀의 남편과 아이들과 가정인 것이다”라고 했다. 한편, 나치는 동성애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인 175조를 철폐하려는 노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적대적인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는 나치가 동성애를 대했던 태도를 잘 보여준다.

“우리는 우리 나라를 좀먹는 어떤 것이라도 거부하기 때문에 당신들, 동성애자들을 거부한다. 동성애를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우리의 적이다. 우리는 우리 국민을 나약하게 만들고 적들에게 놀림감이 되게 하는 것이라면 어떤 것도 거부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 현실은 투쟁이며, 따라서 남자들이 서로 겨루는 것이 미친 짓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의 역사는 동성애와는 정반대로 가르친다.....이것은 단지 한 가지 방법으로만 달성할 수 있다. 독일국민은 단련하는 법을 다시 한번 배워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특히 동성애와 같은 모든 음란한 행태를 거부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국민을 억압하는 노예 상태로부터 우리 국민을 해방시킬 마지막 기회를 우리에게서 앗아가기 때문이다.”

나치는 사회주의자, 동성애자, 유대인, 집시 등을 집단화시켜서 수용소에 수감시켰다. 특히 동성애자들은 175조항에 의해, 단지 행

위 뿐 만이 아니라 '욕망 대상 응시'라는 알 수 없는 감별법을 통해 단지 생각만 한 것으로도 처벌할 수 있었다. 당시의 사망자 기록은 확실하지 않지만 약 5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용소에 보내진 동성애자들은 분홍색 삼각형을 가슴에 달게 되었는데, 이렇게 분류된 동성애자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최악의 대우와 폭력과 비난에 노출되었다. 나치는 동성애에 음란, 부자연스러움, 나약함을 덧씌웠다. 이는 동성애가 성의 문제와 결부된 정체성이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나치는 '동성애'라는 하나의 성 정체성을 통제하는데 있어서, 외적으로는 법적 처벌, 내적으로는 견고하게 형성된 가족가치를 강화하여 동성애가 사회에 매우 해악적인 존재임을 선전했다.

2. 메카시즘

미국은 어떤가?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전통적인 성적 지배질서로 복귀하기 위한 절차를 취하자마자 그 동안 용인되었던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관용은 실종되었다. 전쟁 이전의 보수주의가 다시 활보하였던 것이다. 관청과 대중매체, 학교와 교회 등이 모두 합심하여 이성에 가족의 재확립을 위한 캠페인에 가세하였다. 여성에게 전통적인 성역할로 돌아갈 것을 강제하였으며, 보수적인 성윤리를 강화하였다. 이 캠페인은, 위험하지만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적이라는 점에서 동성애자를 공산주의자와 동일시하여 고립시키는 전략을 취하였다. 그러므로 동성애자에게 전후 정상생활의 복귀는, "마녀사냥, 불시습격, 검거와 투옥, 지하우거"를 의미하였다. 전후 억압상황 하에서 "자유주의와 급진주의 조직이나 단체들조차도 지지를 간청하는 동성애자를 외면하였다.

1950년대 동성애자에 대한 억압은 1940년대 후반기보다 더욱 잔인하고 대대적이었다. 동성애자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은 메카시즘에서 시작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냉전의 긴장 분위기가 고조되어 가던 시기에, 공화당은 공산주의자와 연루되어 있는 동시에 동성애자가 행정부처의 요직에 침투되어 있다는 주장으로 트루만 행정부에 대한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외부와 내부의 적으로부터 선량한 미국국민을 보호해야한다는 구실로, 우파조직은 정부관료, 학교교사, 대학교수, 그리고 산업경영자의 지위에서 동성애자를 무자비하게 몰아냈다. 동성애자의 제거작업은 정당화되었다. 동성애자는 정서적인 안정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무고한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무엇보다도 외부의 적인 공산주의자와 내통하고 있다는 지배담론을 만들어 효과적으로 유포하였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의 정권교체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아이젠하워의 대통령 취임 후, 미국국가는 동성애자에 대한 탄압에 FBI, CIA와 경찰과 같은 억압적인 국가기구까지 총동원하였다. 1950년대 초에 동성애자들은, 냉전에 의하여 주도된 적으로 일반국민의 공포의 대상이 되어 속죄양으로 이용되었다.

청소년 보호를 구실로 동성애 혐오를 정당화

무엇을 교육하는 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교육은 사회가 받아들이는 것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반영한다. 이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가장 적절하고 보수적으로 훈육해야 할 학교라는 장에서 그 반발은 더욱 거세지는 것이 당연하다. 청소년보호법부터 학생인권조례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에 대한 차별, 청소년 보호 논리는 동성애혐오를 지탱해주는 한 축이다. 청소년이 미성숙하다는 관점은 청소년을 동성애라는 부도덕한 문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각종 통제를 해야 한다는 구실을 제공한다.

“친구사이?”에 남성끼리 목욕하면서 애무하고 키스하는 장면, 남성의 성기에 손을 대는 장면 등 청소년에게 동성애에 대한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장면이 여과 없이 담겼다. 중학생이 이와 같은 동성애 장면을 호기심으로 접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렇게 좋아지고 결국 자신의 성적정체성마저 의심하게 된다.”

2010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이들은 “사회에서도 논란이 되는 동성애를 학교에서 허용하면 사춘기를 겪으면서 성 정체성을 찾아가는 청소년들에게 동성애, 양성애적 성 취향을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메사추세츠주에서 청소년들에게 항문성교를 가르치고 있다며 비난하거나, 실제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정된 공정교육법에 반대하는 한인교포들의 소식을 전하며 동성애법이 통과된 뒤 서구사회는 무너지고 있다고 호도한다.

“동성애법 통과된 캐나다 토론토 교육청 성교육
 1학년(6세)때는 사람의 성기에 대해
 3학년(8세)때는 동성애와 성별정체성에 대해
 6학년(11세)때는 자위행위의 즐거움을
 7학년(12세)때는 이성간 성행위 및 항문성교 교육“

- 에스더기도운동본부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해 배우고 고민할 기회를 교육이 제공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일이다. 그들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 동성애자가 이성애자보다 평균 수명이 20~30년이 짧고 우울증에 걸리는 등 불건강하기 때문에 일찌감치 동성애를 그만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높은 청소년 성소수자 자살률이 통계상에서는 동성애자 평균 수명을 낮추고 있는 것 아닌가.

그들은 누구인가?

기독교는 어쩌서 동성애를 상대로 한 '영적 전쟁'에 그토록 목숨을 거는가? 바성연의 주축멤버로 활동하는 이들을 나열해보자.

김미영 교수(한국전쟁남북사건자료원연구실장), 전용태 변호사(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 이용희 교수(에스더기도운동본부), 김원평 교수(부산대 교수, 낙태반대운동가), 의회선교연합, 강현일 사무총장(국가조찬기도회), 주선애 교수(장신대 명예교수), 최재훈 감독(Holy&Bless대표), 이억주 목사(한국교회언론회), 정성희 목사(사 국제교류협력기구 사무총장), 이규 목사(신촌 아름다운 교회), 유병진(명지대학교 총장), 이은일(한국창조과학회 회장) 등 종교단체 대표자들이 대부분이다.

이요나 목사(홀리라이프)는 처음에 주요 인물이었다가 최근 바성연이 김정현 양심고백을 이용하여 동성애자들을 괴물로 몰아붙이며 정략적으로 동성애를 이용하는 것에 반발하여 바성연을 탈퇴했다. 이요나 목사는 그 자신이 동성애자였음을 알리며 동성애는 죄이지만 이들을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성경적 치유 상담을 진행하는 인물이다. 동성애반대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다른 경향이 존재한다.

2003년에 청소년보호법 상 동성애차별조항 삭제를 반대했던 한기총으로부터, 2007년의 동반국, 그리고 2010년의 바성연에 이르기까지 그 배후에는 '한기총'으로 대표되는 거대한 우익 기독교가 존재했다. 이들은 신도수 수십만의 대형교회들을 중심으로 동성애혐오 선전을 펼친다. 얼마전 이들은 전국 교회에 4만여부의 동성애혐오를 조장하는 전단을 배포하기도 했다. 그들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혐오 세력과 손잡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활동을 가장 열심히 '에스더기도운동본부'를 보자.(여기는 바성연과 한 사무실을 쓴다) 해외에서 이들은 '남가주 교회협의회'와 연합하여 동성결혼 금지법안인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8'에 찬성표를 던지는 운동을 전개해온 바 있다. 최근에도 의회선교연합의 김영진 장로는 미국에 건너가 한국에서 동성애, 동성혼 입법 저지를 위한 교계 회의를 열고 미주 지역 한인들을 결집한다.

'에스더'와 '바성연'은 차별금지법 반대 및 동성애혐오조장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에스더의 이용희 대표는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발언자이다. 우간다 동성애 금지법 강화의 배후 세력으로 미국의 극우 기독교 단체들이 지목되기도 했었는데, '에스더기도운동본부'는 이러한 미국 기독교단체의 움직임에 가장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곳이기도 하다. 요컨대 국제 호모포비아 세력을 주도하는 미국 우파 기독교의 가장 적극적인 협력자 중 하나가 한국 기독교진영이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행보는 국가조찬기도회장이었다. 새누리당 대표이자 국회 조찬기도회장인 황우여는 가장 대표적인 반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정치인이자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여당의 대표라는 점에서 반동성애적 입장이 의회 등에서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으로 임명되었던 장순홍은 한국창조과학회 멤버이다. 창조과학회는 성경의 근본주의를 지탱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동성애 반대 논리를 생산한다. 이들은 진화론을 동성애를 지지하는 이론으로 보고 동성애가 선천적이거나 유전적 결과가 아니라는 근거를 마련한 후 결국 이것이 사회적 영향력에 의한 확산이라는 주장을 한다. 현재 소장 후보로 올라왔다가 비리로 낙마한 이동훈은 균형법 92조를 합헌 결정하고 촛불시위를 탄압했던 재판관이었다. 한편 지난 정부 이후 고위관료 및 정치인들의 개신교 성향은 점점 강해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내 설립된 선교회 관련 보도는 그런 우려를 현실화한다.

분명한 것은 박근혜 주변은 이러한 우파 기독교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집권과 함께 강경 우파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진짜로 "며느리가 남자라니 동성애가 웬 말이나"며 수준 이하의 주장을 펼치는 자들이 주류 정치의 권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파들은 성적 보수주의, 성차별, 가족주의를 선동하면서 동성애 편견을 부추길 것이다. 낙태는 엄중히 처벌하면서 '엄마가산점제'를 도입하는 의도를 보라. 박근혜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성별, 가족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하기 어려우며 일반 국민의 여론도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파 기독교의 배후에는 정치적 우파들이 있다. 그들은 아주 끈끈하게 얽혀있고, 우파 기독교는 우파 정치가 이런 혐오 선동을 통해 이득을 얻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

그들은 성소수자가 드러나는 모든 곳을 공격한다.

성소수자 운동이 급격히 가시화하면서 성장하는 동안, 반대편에서는 기독교 우파들이 성소수자가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에 격렬히 반대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에는 서울시 및 구청의 성소수자 인권 광고 허용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우파들은 동성애가 공식적, 제도적 인정을 통해 권리를 획득하는 데 반대한다. 그래서 그들은 미디어에서의 동성애 표현이든, 구청에서의 동성애 광고 게재 문제는 가리지 않고 쫓아다니며 '가시화'가 바로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것도 문제 삼으며 인권위법도 폐기하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제도적 인정은 그런 면에서 우파들의 핵심적인 타깃이다. 하반기 동성결혼 금지에 대해 위헌 소송이 제기된다면 제도적으로 동성애를 인정할 것인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최근 들어 성소수자 관련 보도가 늘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동성애는 사회에서 좌우를 가를 중요한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차별과 혐오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최근에 보도된 세계 각국의 혐오범죄 사건들이다. 한국에 보도되는 횡수도 잦다.

푸에르토리코에서 폭탄 테러를 암시하는 글로 동성애자 권익 운동가를 위협 "집회 때 조심하라. 보스턴 마라톤 테러 사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림

중국에서는 성소수자 차별 반대 행진을 연 18세 남성이 체포. 중국 수사 당국은 17일 국제 동성애 혐오 반대의 날을 기념해 후난성 성도 창사에서 행진을 주최한 그를 불법 집회 혐의로 체포, 12일간의 구류 받게함.

체코에서는 교수 임면권을 가진 대통령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교수 임명을 거부. 대통령은 현지 공영TV와의 인터뷰에서 "게이 페스티벌에 참여하면서 대학 교편을 잡으려는 이들을 인정할 수 없다"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에서 지난 18일 한 남성 동성애자가 호모포비아로 추정되는 남성에게 살해당함.

개인의 개인에 대한 폭력부터, 일부 무슬림 국가들에서 시행하는 동성애자에 대한 사형집행같은 국가 폭력까지, 호모포비아로 인한 혐오범죄는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다. 직접적으로 신체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 불특정 다수의 혐오의 대상, 폭력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성소수자들에게 다시 골방에 처박혀 세상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낳는다.

혐오는 어떤 구실을 하는가? 사람들은 차별 받는 그 사람 자체를 지목하여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집단을 미워하고, 미워할 이유를 찾고, 불만을 쏟아낼 대상을 찾고, 이들이 자신을 위협한다고 여긴다.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은 그 대상을 찾는데 편리한 근거들을 제공한다.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일자리를 빼앗는 주범처럼 취급 당한다. 실제로 한 건설노동자는 자신이 스스로 불법체류자를 소탕하는 단체에 가입했다고 자랑스레 말한다. 노르웨이에서 수십명의 청소년을 살해한 브레이비크는 유럽에 들어온 이주민들 때문에 자신이 못 살게 된 것에 분노하여 살인을 저질렀다고 한다. 경제위기와 양극화가 심화되는 지금, 사람들은 인내심을 시험당하면서 관용의 여유는 점점 더 줄어들기 마련이다. 그렇게 되면 원래 자신보다 못하거나 무시해도 된다고 여겼던 대상에게 더욱 각박하고 잔인해진다. 성소수자가 동성결혼을 요구하면서 사회경제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나, 국가가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하는 것, 이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모두가 자신의 파이를 빼앗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결국 혐오는 사회적 권리와 분배 문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다.

차별금지법도 그렇다. 이 법 제정이 동성애 찬반논쟁으로 기운 데에는 사실 우파의 역할이 컸다. 동성애에 대한 사람들의 혐오와 편견을 부추겨서 '기본적인 차별금지'조차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이다. 혐오가 강력해질수록 성소수자를 더욱 위축시키고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효과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를 위한 제도적 조치도 만들어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차별은 결국 사회에서 이런 용도로 사용된다. 차별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차별 받는 사람들이 얼굴을 드러내고 나서는 것을 원치 않는다. 수치심 속에서, 자신감 없이, 벽장 속에 갇혀 있기를 바란다. 그래야 편견은 유지될 것이고 자신들이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을 테니까. 차별은 결국 사람과 사람을 점점 멀어지게 하고 사람의 얼굴이 아닌 다른 어떤 괴물로서 서로를 보게 만든다는 점에서 해악적이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혐오에 반대하는 운동은 어떻게 확대되어야 하는가?

러시아 하원에서 '동성애 선전 금지법안'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청소년에게 동성애 정보를 제공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프랑스에서는 입양을 포함한 동성결혼법이 통과되었다. 지금 세계는 동성애혐오와 그에 따른 폭력이 눈에 띄게 늘고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성소수자도 눈에 띄게 가시화하고 있고 투쟁도 약진하고 있다. 혐오는 위기를 반영하고, 권리의 진전은 적극적인 투쟁과 저항의 성과를 반영한다.

한국은 최근 가장 큰 폭으로 동성애에 대한 수용 정도가 큰 폭으로 증대한 나라이다. 하지만 그만큼 혐오도 가시화되고 있다. 성소수자가 가시화할수록 혐오도 더욱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두 가지가 언제나 동반 상승하는 것만은 아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자주 접하는 기독교 우파들의 말도 안되는 주장을 그대로 동조하거나 답습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이다. 절대 국회의원의 말처럼 소수 기독교 우파들이 때를 써서 차별금지법안을 철회한 것만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운동의 힘, 그리고 쟁점이 제기되었을 때 사회의 여론이 어느 쪽으로 더 열려 있는 상황인가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과정을 보자. 당시 신자유주의 우파 정부가 여전히 집권하고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 중간평가 격이었던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진보진영이 대거 당선하면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대중의 반감이 명확히 드러났다. 특히 서울에서 광노현 서울시 진보교육감이, 2011년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면서 진보와 보수 판세가 뒤집어지고 이명박과 집권 여당은 위기 속에 놓이게 된 것이다. 중요한 쟁점으로 급부상했던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임신출산 및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차별금지를 넣느냐 마느냐를 두고 제도적 인정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상황 속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시 민주통합당 시의원 압박에 성공한 것도 민주당조차 좌선화하고 있는 당시 정세와 무관하지 않다. 한미 FTA 반대 촛불시위에 민주당이 참여하고 있었고, 우리는 그 곳에 나가 시민들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사회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이를 위한 행동이 결집될 때에는 성소수자 권리와 같은 다른 민주적

권리와 평등권의 요구도 커질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차별금지법이 성소수자 뿐만 아니라 여러 차별을 금지하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성소수자 운동이 이 쟁점에서 이니셔티브를 발휘하고 있는 까닭은 다분히 위에서 말한대로 우리의 존재를 공격받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분명히 제도에서 잘려 나가는 것의 의미를 알고 있다. 지금 당장 법 제정이 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게다가 법 제정 자체는 성소수자 운동이 이니셔티브를 발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차별금지법이 대중적 압력을 가지고 요구될 때 큰 규모의 투쟁을 통해 사회 여론이 변화할 때 제정될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과정도 그랬다. 우리는 좀 더 다른 조건에 있긴 하다. 차별금지법이 경합을 벌이는 과정에서 계속 혐오 공세는 이어질 것이고 아마 동성애자들은 공세에 맞서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함께 외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넓게 혐오에 반대하는 운동을 만들어가려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될 것이다. 이것은 지난 무지개행동 전체 모임에서도 참여자들이 많이 제기한 부분이다. 혐오를 넘어서기 위한 운동은 성소수자들이 주도해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법안도 혐오 선동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제정될 수 있다.

막강한 힘을 지닌 것처럼 보이는 동성애혐오 세력을 과연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전에 무지개 행동에서 진행되었던 비슷한 주제의 토론에서도 많이 제기되었던 바이지만 우리에게 연대를 통한 지지자와 동료들이 더 많이 필요해지고 있다. 진보 기독교인들은 그런 면에서 매우 중요한 연대세력이고, 청소년 또한 그렇다. 다양한 세션이 진행된 지난 LGBT인권포럼은 단적으로 연대가 확장되는 현재를 보여주었다. 희망버스나 학생인권조례투쟁은 노동자, 철거민 등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연대할 가능성을 크게 보여주었다. 서로 자신의 위치에서 공통성을 발견하게 되는 연대의 경험을 하고 있다.

지금은 우리가 겪어왔던 어느 시기보다 혐오가 가시화되는 시기이다. 하지만 다행스런 것은 그 동안 성소수자 운동도 성장하면서 연대와 기반을 확대해 왔다는 점이다. 얼마전 퀴어퍼레이드 행진은 적어도 7~8천명 이상이 모였다. 작년에 비하면 두 배이상 규모가 커졌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 이 곳에 참여했던 성소수자를 비롯하여 퍼레이드를 지켜본 성소수자들은 열이면 열 깜짝 놀랐다. 1만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성소수자임을 자처하거나 지지하며 거리를 행진하다니, 생각만으로도 어깨가 펴지고 자신감이 차오를 일이다. 성소수자들에게 규모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고, 거리에 스스로 모여 자신을 드러내고 외치는 것이 규모 이상의 힘을 심어준다는 것도 중요하다. 성소수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성장은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요구가 매우 지지할만하고 사회적 관심이 큰 일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소수자 혐오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규모와 목소리가 표현될 수 있는 지속적 캠페인이 되어야 한다.